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양민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9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0년 12월 22일
발 의 자 : 양민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동길, 권순선, 김상진,
김생환, 김수규, 김용연,
문영민, 이동현, 이석주,
이호대, 전병주, 최기찬 의
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인 마포평생학습관 내 수영장 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고 있으나, 사용료 반환 및 감면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해 혼동을 줄 수 있는바,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평생학습관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(안 제2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·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,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(생략)</p> <p>②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·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여 징수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·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,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